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61호 2020. 10. 12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
-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

공 고

-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..... 5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 2020-277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25번길 9	2020.10.12	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목포시 고시 제 2020-27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1	해양대학로 66	2020.10.08.	건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고시 제 2020-279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목 포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:

종전의 주소	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의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옥암동 1169-6	당가두로38번길 26-1	직권	2010.06.21.	옛지명 당가두 사용.
대성동 190	양을로68번길 14	직권	2009.11.23.	양을산터널을 통과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임.
상락동1가 11-1 외 2필지	변화로 79	직권	2009.11.23.	일제시대 가장 변화한 거리였음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10. 1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목 포 시 장

1. 조 례 명 : 「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의 비중을 확대하여 청년문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변경 (안 제10조 1항 개정)

- 시장에서 담당업무 국장으로 변경

나. 당연직 위원 축소 (안 제10조 2항, 3항 개정)

- 청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당연직 위원(국장급 5명)을 담당업무 과장 1명으로 축소하고
-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

다. 위원회 간사 변경 (안 제11조 3항 개정)

- 위원회 간사를 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에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변경

4. 관계법령

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청년기본법」 제17조(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)
- ※ 「청년기본법」 : 2020. 2. 4. 공포(2020. 8. 5. 시행)

5. 관련부서 의견 :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: 없음

6. 개정 조례(안) : 별첨

7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0. 12. ~ 2020. 11. 02.(21일간)

8. 의견제출

-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0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일자리청년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나.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

- [우58613]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(용당동), 목포시청 2층 일자리청년정책과
- ☎ 061)270-8771 / Fax 061-270-8791 / 이메일 faithful250@korea.kr

8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0조 1항 중 “위원장은 시장이 되며” 를 “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” 로 한다.

제 10조 2항 중 “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, 자치행정복지국장, 경제산업국장, 보건소장,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.” 를 “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.” 로 한다.

제 10조 3항 중 “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” 를 “청년 10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” 로 한다.

제 11조 3항 중 “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으로” 를 “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<u>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</u>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 -----, <u>위</u> <u>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</u> ----- -----.
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<u>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, 자치행</u> <u>정복지국장, 경제산업국장, 보건소</u> <u>장,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.</u>	② ----- <u>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.</u>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<u>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단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, <u>청년</u> <u>10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.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생 략) ② (생 략)	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</u>	③ ----- ----- <u>담당</u> <u>업무 팀장으로 한다.</u>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